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

제14조(급여방식 및 급여품목)

①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(이하 "수급자"라 한다)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,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구입방식 : 수급자가 『구입품목』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
 2. 대여방식 : 수급자가 『대여품목』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
- ②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구입품목

- 가. 이동변기, 나. 목욕의자, 다. 성인용 보행기, 라. 안전손잡이,
마. 미끄럼방지용품(미끄럼방지매트, 미끄럼방지액, 미끄럼방지양말)
바. 간이변기(간이대변기·소변기), 사. 지팡이, 아. 욕창예방방석, 자. 자세변환용구, 차. 요실금패드

2. 대여품목

- 가. 수동휠체, 나. 전동침대, 다. 수동침대, 라. 이동욕조, 마. 목욕리프트, 바. 배회감지기

3. 구입 또는 대여품목

- 가. 욕창예방매트리스, 나. 경사로(실내용, 실외용)

③ 제3항에 따른 급여품목 외에 새로운 복지용구 품목의 급여를 원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 이사장에게 해당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④ 연 한도액

1.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으로 한다.
2. 연 한도액(공단부담금+본인부담금)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으로 한다. 다만,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.
3.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.

가. 제15조(복지용구 급여기준)

- ① 수급자는 제2조제3항에 따른 급여품목 중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, 복지용구사업소는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- ②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의 바코드가 공단에 등록된 각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(이하 "장관"이라 한다)이 정한 제품별 사용 가능 횟수(이하 "사용 가능 횟수"이라 한다) 이내의 제품만을 대여할 수 있다.
- ③ 제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 횟수가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 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사용 가능 횟수의 1/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다. 대여기간이 연장된 제품의 대여비용 산정 및 연장대여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.
- ④ 수급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복지용구 구입·대여를 할 수 있다.
 1. 사용 가능 횟수가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· 형태 ·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(이하 "장관"이라 한다)이 정한 사용 가능 횟수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. 단, 성인용보행기는 2개, 경사로(실내용)는 6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.
 2.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다.

3. 제2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구입 또는 대여품목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다. 다만, 경사로(실내용)는 구입, 경사로(실외용)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(실내용,실외용)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.
4.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.
5. 연한도액 적용기간중 제2조제3항제1호의 안전손잡이는 10개,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, 미끄럼 방지매트·미끄럼방지액은 5개, 간이변기(간이대변기·간이소변기)는 2개, 자세변환용구는 5개, 요실금팬티는 4개를 구입한도로 한다.
- ⑤ 제4항의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구입한 제품이 사용 가능 했수 기간 중 훼손·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, 수급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 사용 가능 했수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.
- ⑥ 수급자가 의료시설에 입원한 기간동안 전동침대·수동침대·이동욕조·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. 다만, 다른 법령상 예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.

나. 제16조(복지용구 제공방법)

① 판매제품

1. 판매제품은 수급자에 따라 0%~15%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한다.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전 해당지자체 신고 후 승인받은 후에 제품을 제공하여야 한다.
2.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 및 대여 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.
3. 시설은 복지용구의 기능,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,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대여제품

1. 대여제품은 판매방법과 동일하나 대여료의 월별 징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1년 내지 6개월 단위로 수급자 형평을 최대한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.
2.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,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.
3.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,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. 다만,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다.
4. 복지용구 가격은 배송비, 설치·철거비,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,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.
5. 수급자가 대여기간 도중에 의료시설에 입원한 경우에는 최대 15일까지 대여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.
6.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.